

세이 고배당 주식형 투자신탁(종류형)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세이 고배당 주식형 투자신탁(종류형)”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거하여 ‘세이에셋코리아자산운용주식회사’가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위험, 주된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투자방침, 가입방법, 투자금 회수 방법, 관련 보수 및 수수료, 과세 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이 고배당 주식형 투자신탁(종류형)

| | |
|---|--|
| 투 자 신탁 명 | 세이 고배당 주식형 투자신탁(종류형) |
| 자 산 운 용 회 사 명 | 세이에셋코리아자산운용(주) |
| 관 매 회 사 명 및 상 담 가 능 전 화 번 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움닷컴증권(☎3787-5000, www.kiwoom.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 굿모닝신한증권(☎3772-1000, www.goodi.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 SK증권(☎1588-8245, www.sks.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SK빌딩 ● 대신증권(☎769-2000, www.daishin.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 이트레이드증권(☎1588-2428, www.etrade.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2 ● 삼성증권(☎1588-2323, www.samsungfn.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종로타워빌딩 ● 메릴린치 인터내셔널 인코포레이티드 증권 서울지점(☎3707-0400)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84번지 서울파이낸스센터 29층 <p>판매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판매행위준칙 등을 준수합니다. ※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 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을 보전하지 않습니다.</p> |
| 작 성 기 준 일 | 2008년 7 월 2 일 |
| 투 자 설 명 서 비 치·공 시 장 소 및 인 터 넷 계 시 주 소 | 판매회사 본·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세이에셋코리아자산운용 인터넷 홈페이지(www.seiak.com) 자산운용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amak.or.kr) |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요약(핵심설명서): 이 펀드의 주요 특징만을 파악하고 싶다면?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이 펀드의 기본정보를 알고 싶다면?

| | |
|--|----|
| I. 투자신탁의 개요 | 06 |
| 명칭, 펀드존속기간, 분류, 자산운용회사, 최초설정일 등 연혁, 수탁고 추이, 해지사유 | |
| II. 투자정보 | 06 |
| 투자목적, 주요 투자전략, 주요 투자위험,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운용전문인력, 투자실적(연평균 수익률, 연도별 수익률 추이) | |
| III. 수수료·보수, 과세 | 10 |
|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 |
|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 13 |
| 매입, 환매, 이익 등의 분배 | |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이 펀드를 상세하게 알고 싶다면?

| | |
|--|----|
|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 15 |
| 투자전략, 투자위험, 투자대상, 투자제한 | |
| II. 자산의 평가 | 19 |
|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 19 |
|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및 이익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 20 |
|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유의사항, 수익증권의 환매관련 유의사항, 이익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 |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이 펀드의 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를 알고 싶다면?

| | |
|--|----|
| I. 자산운용회사 | 22 |
| 회사의 개요, 주요업무, 최근 2개 사업연도의 요약재무내용, 운용자산 규모,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
| II. 판매회사 | 24 |
| 회사의 개요, 주요업무 | |
| III. 수탁회사 | 25 |
| 회사의 개요, 주요업무 | |
| IV. 일반사무관리회사 | 26 |
| 회사의 개요, 주요업무 | |
| V. 채권평가회사 | 26 |
| 회사의 개요, 주요업무 | |

제4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투자자의 권리와 공시제도에 대해 알고 싶다면?

| | |
|---|----|
| I. 수익자의 권리 | 28 |
|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잔여재산분배,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손해배상책임, 재판관할,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
| II. 공시 | 30 |
| 정기공시 및 보고서, 수시공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핵심설명서)

I 투자신탁의 개요(☞본문 6 쪽)

1. 명 칭 : 세이 고배당 주식형 투자신탁(종류형)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68675**)
2. 펀드존속기간 : 추가형이어서 별도의 종료일이 없습니다.
3. 분 류 : 증권간접투자기구, 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계약형, 종류형**
4. 자산운용회사 : 세이에셋코리아자산운용(주)

II 투자정보(☞본문 6~10 쪽)

| 구 분 | 주요내용 |
|--------------------|--|
| 1. 투자목적 | - 투자신탁의 60%이상 을 배당수익률이 높고 내재가치가 우수한 주식에 집중 투자하여 시장과 차별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장기적으로 자본이득과 배당이익을 동시에 추구 * 비교지수: KOSPI x 100% (비교지수는 세이에셋코리아자산운용회사 홈페이지(www.seiak.com))에서 확인 가능) |
| 2. 주요 투자전략 | - 종목별 시가비중을 감안한 시장전체를 추종하는 투자전략을 지양하고 시장과 차별화된 Portfolio 구성 - 주식시장의 하향 리스크에 방어적인 성향을 가지면서 안정적인 수익확보가 기대되는 고배당 주식, 우량 우선주와 신형 우선주에 집중 투자 |
| 3. 주요 투자위험 | - 「 예금자보호법 」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주식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 -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5등급 중 1등급으로 매우 높음 - 따라서 주식 및 채권투자의 기본적인 속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으며,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 |
| 5. 기준가격 | -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 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를 발행 수익증권 총수로 나누어 매일 산출 - 판매회사 영업점 또는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seiak.com)에서 확인 가능 |

6. 운용전문인력

| 성명 | 나이 | 직위 | 운용현황(2008.02.05) |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
| | | |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수 | 다른 운용자산규모 | |
| 조경수 | 67년생 | 이사 | 55개 | 21,101억좌 | - 미 조지워싱턴대학교 금융공학 석사 - 주식 운용(하나알리안츠투신운용 4년, 세이에셋코리아자산운용 2004.10~) |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팀을 총괄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7. 투자실적 추이(연평균 수익률): **이 실적은 과거성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해당사항 없음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본문 10~14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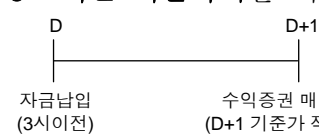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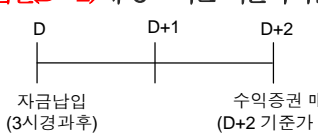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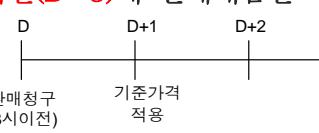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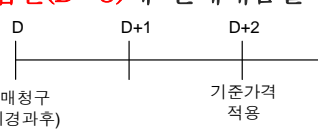
1. 수수료 및 보수

| 구분 | | 지급비율(연간, %) | | | |
|-------------------------------|------------------------|---|----------|----------|----------|
| 종류 | | 종류 A1 | 종류 C1 | 종류 Ce | |
| 수익증권 판매 기준 |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온라인 판매 | |
| 수익자가 직접 부담하는 수수료 | 선취 판매수수료 ¹⁾ | 납입금액의 1% | - | - | |
| | 환매수수료 ¹⁾ |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90일 미만: 이익금의 30% | | | |
|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순자산총액 기준) | 보수 | 운용회사보수 | 연 0.700% | 연 0.700% | 연 0.700% |
| | | 판매회사보수 | 연 1.100% | 연 1.800% | 연 0.250% |
| | | 수탁회사보수 | 연 0.030% | 연 0.030% | 연 0.030% |
| |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연 0.014% | 연 0.014% | 연 0.014% |
| | 기타비용 | - | - | - | |
| 총보수·비용비율 ²⁾ | | 연 1.844% | 연 2.544% | 연 0.994% | |

주 1) 선취 판매수수료는 매입시점에서, 환매수수료는 90 일 미만 환매시 일회적으로 부과
 2) 총보수·비용비율은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전체적인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냄

2. 과세: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주식 양도차익 제외)에 대하여 **소득세 등 (2008.02.05. 현재 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세부사항은 본문참조 요망

3. 매입·환매절차: 이 수익증권의 매입·환매는 판매회사의 영업시간(오전 시~오후 시)에만 가능

| 구분 | 오후 3시 이전 | 오후 3시 경과 후 |
|----|---|---|
| 매입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 영업일(D+1)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 3 영업일(D+2)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 환매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 2 영업일(D+1)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제 4 영업일(D+3) 에 환매대금을 지급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 3 영업일(D+2)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제 4 영업일(D+3) 에 환매대금을 지급  |

※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민원)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의 상담센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핵심설명서)’은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투자위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설명서 본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판매회사) (점포명) (판매직원/취득권유인 직위 및 성명) (은)는 (고객 성명)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주요내용(환율변동 위험 포함)을 설명하였습니다.

판매직원/취득권유인 서명 또는 (인)

제 1 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I. 투자신탁의 개요

1. 명 칭 : 세이 고배당 주식형 투자신탁(종류형) (자산운용협회 펀드 코드: 68675)
2. 펀드존속기간 : 이 상품은 추가형 상품으로 종료일이 따로 없습니다.
3. 분 류 : 증권간접투자기구, 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계약형, 종류형
4. 자산운용회사 : 세이에셋코리아자산운용(주)
5. 최초설정일 등 연혁: 2007. 5. 9 최초 설정
6. 수탁고 추이 : 해당사항 없음
7. 해 지 사 유 : 자산운용회사는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1 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3) 투자신탁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II.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배당수익률이 높고 내재가치가 우수한, 자산운용회사가 판단하는 “고배당주” 기준에 부합되는 종목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 등락위험 노출을 최소화하여 중장기적으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 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비교지수: KOSPI * 100%

(비교지수는 세이에셋코리아자산운용회사 홈페이지(www.seiak.com)에서 확인 가능)

2. 주요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주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주식 중 상대적으로 증시변화에 따른 하향 리스크가 작고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기대되는 고배당 주식, 우량 우선주와 신형 우선주 등에 집중투자하여 시장과 차별화된 Portfolio를 구성하며, 장기적으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자본이익과 배당수익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 투자대상 종목: SEI Asset Korea의 Valuation Model을 통해 발굴된 재무적 안정성과 성장성 및 가치가 확보된 Buying List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 중 배당수익률이 높고 내재가치가 우수한, 자산운용회사가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고배당주” 기준을 충족하는 종목

가. 고배당주 선정기준

- 거래소시장 및 협회등록시장 평균 배당수익률 이상의 배당수익률이 기대되는 주식
- 과거 평균배당률이 안정적이거나 상승추세인 주식
- 배당성향이 인색하거나 과도하지 않은 주식
- 잉여 현금흐름이 대체로 (+)인 주식
- 대주주나 경영진이 주주이익을 중시하는 주식

나. 벤치마크(Benchmark): 한국종합주가지수(KOSPI)

자산운용회사는 본 투자전략을 통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수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투자전략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15 페이지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중 '1. 투자전략'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국내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서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유동성에 따른 위험, 파생상품투자에 따른 위험, 순자산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원금손실위험 | 이 투자신탁재산의 투자에 대해서는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투자금액의 손실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 시장위험 | 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국내금융시장의 주식,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
| 파생상품 관련 위험 |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은 장외파생상품을 발행한 회사와의 직접적인 거래이므로 그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의 원리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거나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 당해 투자신탁은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 수익증권을 매입할 경우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의 투자원본 또는 수익을 보장하지 아니함을 주지하여야 합니다.

※ 투자위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16 페이지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중 ‘2. 투자위험’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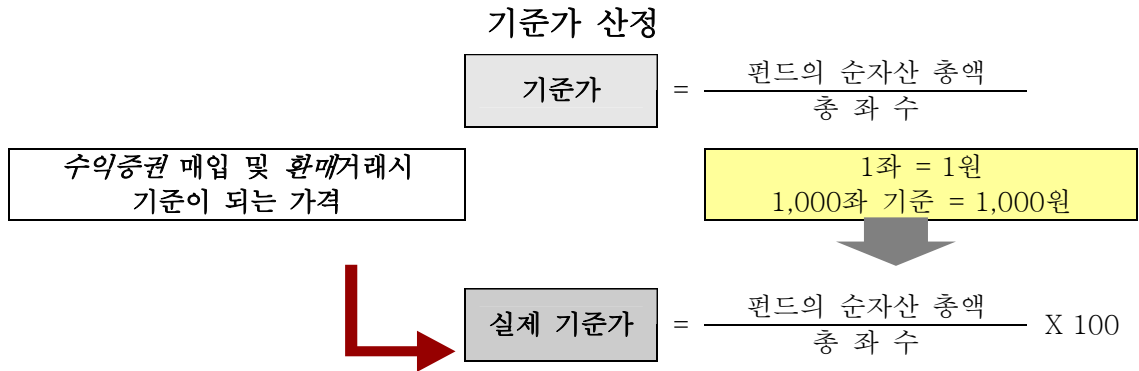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써 주식시장 변동에 따른 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5등급중 1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주식투자 및 스타일투자의 기본적인 속성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있으며, 주식형 펀드의 분산투자 필요성을 느끼는 장기투자 선호 고객을 주된 권유대상으로 합니다.

가. 투자등급

| 위험등급 | | 투자자 유형 |
|------|----------|------------------------------|
| 1등급 | 매우 높은 위험 | 주식편입비율이 약관상 최저 60%이상인 증권투자신탁 |
| 2등급 | 높은 위험 | 주식편입비율이 약관상 최대 50%이상인 증권투자신탁 |
| 3등급 | 중간 위험 | 주식편입비율이 약관상 최대 50%미만인 증권투자신탁 |
| 4등급 | 낮은 위험 | 국공채 및 회사채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 5등급 | 매우 낮은 위험 | MMF |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구 분 | 내 용 |
|---------------------|---|
| 기준가격 산정방법 | 당일 발표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 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 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 펀드간 판매 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기준가격 산정주기 |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않습니다. |
| 기준가격 공시시기 |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
|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 판매회사 영업점, 운용회사(www.seiak.com)· 판매회사·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

6. 운용전문인력

(단위: 개, 억좌)

| 성명 | 나이 | 직위 | 운용현황(2008.02.05) |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비고 |
|-----|----------|----|------------------------|------------------|--|-----|
| | | |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 수 | 다른 운용자산 규모 | | |
| 조경수 | 67 년생 | 이사 | 55 | 21,101 | (팀운용)주식운용팀장 미 조지워싱턴대학교 금융공학 석사 하나알리안츠투자신탁운용 주식팀장(4년) 세이에셋코리아자산운용(주) 주식운용팀장(2004.10~) | 팀운용 |

※ 상기인은 이 팀을 총괄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운용전문인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24 페이지 ‘제 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의 ‘I. 자산운용회사’중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투자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자산운용협회 (www.amak.or.kr)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해당사항 없음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해당사항 없음

III.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가 직접 부담하는 수수료

| 구 분 | | 지급비율 (연평균가액의 %) | | 비고 (지급시기) |
|------------------------|----------|--|--------------|--------------|
| | | 종류 A1 | 종류 C1, 종류 Ce | |
| 수익자가 직접 부담하는 수수료 | 선취 판매수수료 | 납입금액의 1% | - | 매입시 |
| | 후취 판매수수료 | - | - | - |
| | 환매수수료 | 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30 일 이상~90 일 미만: 이익금의 30% | | - |

2. 투자신탁이 부담하는 보수 및 비용

| 구 분 | 지급비율 (연평균가액의 %) | | | 비고 (지급시기) |
|------------------------------|-----------------|-----------------|-----------------|-----------------------|
| | 종류 A1 | 종류 C1 | 종류 Ce | |
| 운용회사 보수 | 연 0.700% | 연 0.700% | 연 0.700% | 순자산총액기준, 매 3 개월 후급 |
| 판매회사 보수 | 연 1.100% | 연 1.800% | 연 0.250% | |
| 수탁회사 보수 | 연 0.030% | 연 0.030% | 연 0.030% | |
| 일반사무관리 보수 | 연 0.014% | 연 0.014% | 연 0.014% | |
| 기타비용 ¹⁾ | - | - | - | 사유발생시 |
| 총보수·비용비율²⁾ | 연 1.844% | 연 2.544% | 연 0.994% | - |

주¹⁾ 기타 비용은 유가증권 매매거래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주²⁾ 총보수·비용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 (보수·비용 차감 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1,000 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연간 부담수수료 예 (실비를 고려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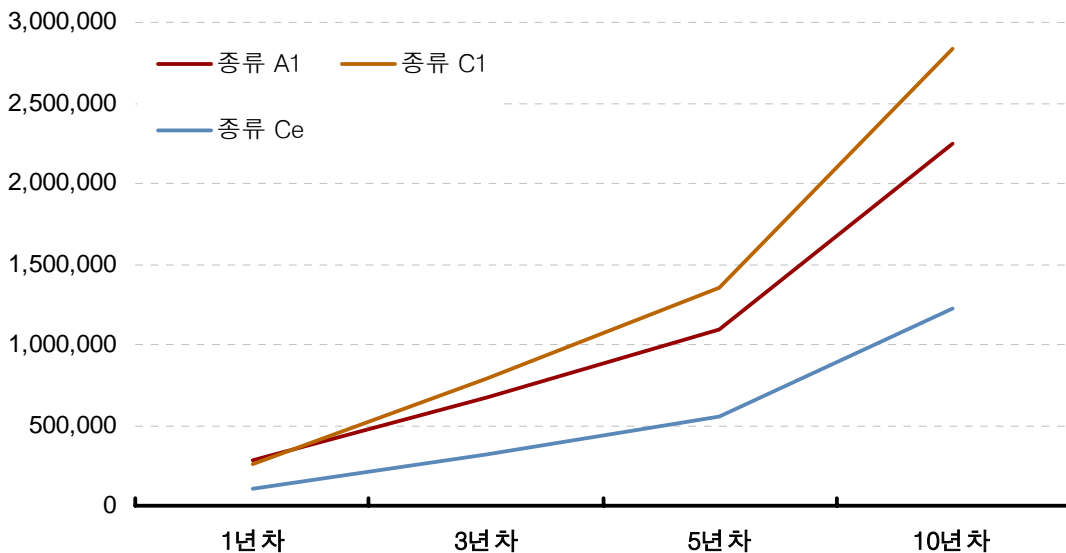
가정)

1. 수익자 A가 투자신탁에 1,000 만원을 투자하여 수익증권을 1,000 좌당 1,000 원에 1,000 만좌 매입
2. 수익증권 매입후 10 년간 보유
3. 1 년차 평균 1,000 좌당 순 자산가치: 1,050.00 원, 3 년차: 1,157.63 원, 5 년차: 1,276.28 원, 10 년차: 1,628.89 원

| 투자기간 | 1 년차 | 3 년차 | 5 년차 | 10 년차 |
|---------|---------|---------|-----------|-----------|
| A1(선취) | 284,884 | 674,226 | 1,088,263 | 2,241,925 |
| C1(일반) | 258,325 | 793,856 | 1,355,584 | 2,883,085 |
| Ce(온라인) | 101,516 | 316,846 | 549,679 | 1,217,961 |

-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비용을 산출한 것임
 2.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고, 선취판매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한 누적 수치임
 3.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수익증권 종류별 총보수·비용 추이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가.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모두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15.4% (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최고 한도세율 25%)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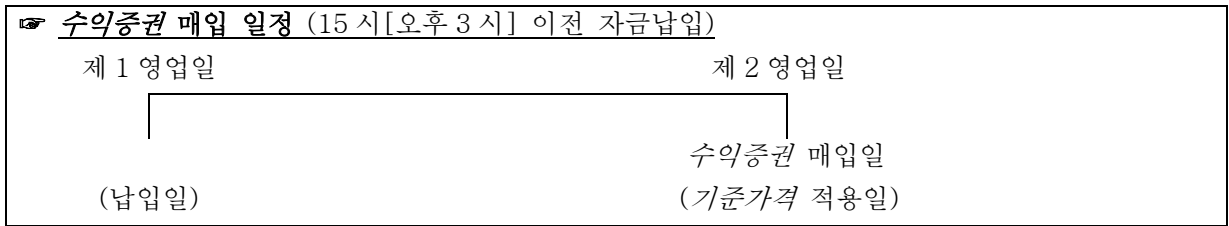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1. 매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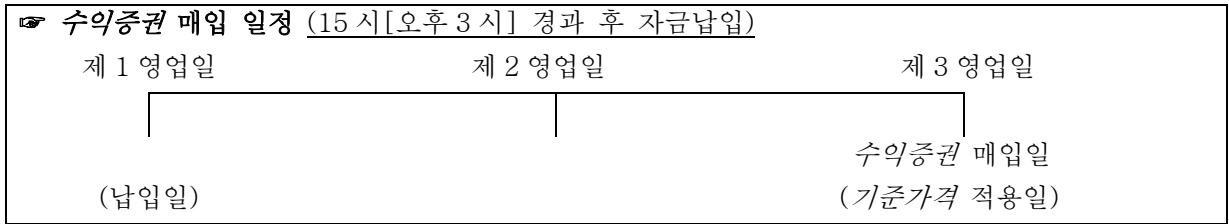
가.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15시[오후3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발표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



2) **15시[오후3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단,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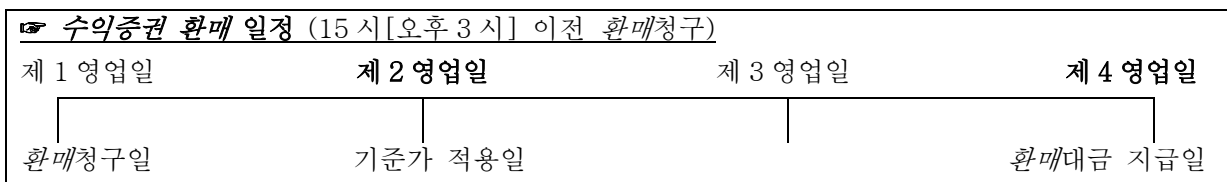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과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은 20 페이지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이익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중 ‘1.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환 매

가.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나.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15시[오후3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2) **15시[오후3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 수익증권 환매 일정 (15시[오후 3시] 경과 후 환매청구) | | | |
|-------------------------------------|---------|---------|----------|
| 제 1 영업일 | 제 2 영업일 | 제 3 영업일 | 제 4 영업일 |
| 환매청구일 | | 기준가 적용일 | 환매대금 지급일 |

다.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의 보유한 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 구 분 | 지급비율(연평균가액의 %) | | | 비고 (지급시기) |
|----------------------------------|-------------------------|--------------------------|-------|--------------|
| | 종류 A1 | 종류 C1 | 종류 Ce | |
|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 30일 미만 30일 이상 90일 미만 | : 이익금의 70% : 이익금의 30% | | 환매시 |

라. 수익증권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5시[오후3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가 15시[오후3시] 경과 후에 이루어졌을 경우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마.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에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은 20 페이지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이익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중 '2. 수익증권의 환매관련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익 등의 분배

가.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 또는 새로운 간접투자증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나.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이익 등의 분배와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은 21 페이지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및 이익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3. 이익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주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주식 중 상대적으로 증시변화에 따른 하향 리스크가 작고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기대되는 고배당 주식, 우량 우선주와 신형 우선주 등에 집중투자하여 시장과 차별화된 Portfolio를 구성하며, 장기적으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자본이익과 배당수익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 **투자대상 종목:** SEI Asset Korea의 Valuation Model을 통해 발굴된 재무적 안정성과 성장성 및 가치가 확보된 Buying List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 중 배당수익률이 높고 내재가치가 우수한, 자산운용회사가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고배당주”기준을 충족하는 종목

가. 고배당주 선정기준

- 거래소시장 및 협회등록시장 평균 배당수익률 이상의 배당수익률이 기대되는 주식
- 과거 평균배당률이 안정적이거나 상승추세인 주식
- 배당성향이 인색하거나 과도하지 않은 주식
- 잉여 현금흐름이 대체로 (+)인 주식
- 대주주나 경영진이 주주이익을 중시하는 주식

나. 벤치마크(Benchmark) : 한국종합주가지수(KOSPI) * 100

다. 투자대상 종목의 스타일

| | | | |
|-----|-----|-----|-----|
| | | | 대형주 |
| | | | 중형주 |
| | | | 소형주 |
| 가치주 | 혼합주 | 성장주 | |

자산운용회사는 본 투자전략을 통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수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표는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중요도 순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
|---------------|--|
| 시장위험 | 주식시장은 시장 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그 등락을 거듭합니다. 그중에서도 경제성장율, 환율, 금리변동 등의 요인들은 개별기업 성과의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주식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쳐 개별주식 가격의 등락을 초래하게 되므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수익자에게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외부변수들의 변화는 투자신탁재산가치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종목위험 | 개별주식은 해당기업의 수익성 및 성장성의 변화에 따라 주식의 가격이 변동되므로 이에 따라 이익 혹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투자대상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기업의 가치보다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에 해당주식을 매수하지만, 자산운용 회사의 판단이 항상 정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투자 손실의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
| 채무불이행 위험 | 채권의 발행주체가 현금흐름의 부족으로 인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투자자급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투자자급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회수완료 시간이 예상보다 길게 소요됨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
|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재투자 위험 | 채권의 가격은 채권의 만기이전에 발생하는 이자수령액이 현재의 채권시장 이자율로 재투자 되어진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채권시장 이자율이 항상 변하고 있어, 만일 이자 수령시의 시장이자율이 당초의 시장이자율보다 낮아질 경우 채권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예상수익보다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
| 파생상품 관련 위험 |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은 장외파생상품을 발행한 회사와의 직접적인 거래이므로 그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의 원리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거나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 순자산가치변동위험 | 투자신탁의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미래가격입니다. 즉, 투자자가 환매 청구하는 시점과 기준가격이 정해지는 시점의 차이로 인해 순자산가치가 투자자의 예상과 다르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환매 연기 위험 |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시 해당 투자자산의 현저한 거래부진, 유가증권시장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투자자의 환매청구에 정상적으로 환매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환매가 제한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 투자대상

| 투자대상 | 투자비율 | 투 자 대 상 세 부 설 명 |
|---|---|--|
| 주 식 | 60% 이상 (고배당주에의 투자 50%이상) | 증권거래법 제 2 조제 1 항제 5 호 및 제 6 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및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등록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이하 “주식”이라 한다) 가. 위에서 정의된 “주식”중 직전 회계연도 결산배당금 기준 배당수익률이 거래소시장 및 협회등록시장 평균 배당수익률 이상인 주식(이하 “고배당주”라 한다) |
| 채 권 | 40% 이하 | 증권거래법 제 2 조제 1 항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
| 어 음 | 40% 이하 | 법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증명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 2 조의 3 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 |
| 금 리스왑거 래 |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 | |
| 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 위탁증거금 기준 신탁재산의 15% 이하 |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식선물 , 주가지수 옵션,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 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 |
| 수익증권등 | 5% 이하 (상장지수간접투자 기구 간접투자증권 30%이하) |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
| 투자증권의 대여 | 투자증권 총액의 50%이하 |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투자증권의 대여 |
| 투자증권의 차입 | 투자증권 총액의 20%이하 | 주식, 채권 및 어음에 의한 투자증권의 차입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보유채권의 50%이하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 수탁회사고유재산과의 거래 | | 법시행령 제 108 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회사 고유재산과의 거래 |
| 단기대출(30 일)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만기 1 년 이내 상품) | ○ |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 운용 |

-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4) 및 5)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 최초 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개월간
 -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개월간
 -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 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초과인 경우
 - 5)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신탁약관 제 37 조제 1 항제 1 호 내지 제 4 호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4. 투자제한

가.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구 분 | 내 용 | 적용예외 |
|-----------|---|-----------------|
| 이해관계인 투자 |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 77 조에서 정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 |
| 동일종목 투자 |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제외한 투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 자산총액의 100%까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 자산총액의 30%까지: 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및 어음(법 제 2 조제 7 호의 투자증권에 해당하는 어음에 한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 법시행령 제 6 조제 1 호 내지 제 6 호 및 제 8 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채무증서 및 어음, 동조항의 금융기관이 보증한 채권(증권거래법 제 2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에 한한다), 채무증서 및 어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 6 조제 1 호 내지 제 6 호 및 제 8 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것에 한한다) 및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ETF)의 간접투자증권 | 최초 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
| 파생상품 투자 |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 최초 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
| |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 |
| |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 |
| 계열회사 주식투자 |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가격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음 | |
| 후순위채 투자 |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

※ 자세한 투자제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 자산의 평가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산의 종류별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합니다.

| 대상자산 | 평가 방법 |
|---|---|
| 상장주식 | 평가기준일에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 비상장주식 |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회계법인·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장내파생상품 |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등이 발표하는 가격 |
|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일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함) |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비상장 채권 (상장채권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에 포함) |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간접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간접투자증권은 거래소에서 거래된 최종 시가로 평가 |
|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는 등 상기 자산의 평가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의 평가방법 및 자산의 평가 규정에 의한 평가의 세부적인 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함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 구 분 |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
|---------------|--|
|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 증권사 및 선물사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비용(Lowest cost) /중개능력(Best execution) 저비용(Lowest Cost)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 채권시장의 특성상 중개수수료(brokerage fee)는 증권사별 경쟁에 의한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거래에 따른 명목 비용은 동일함 2. 비용(Cost) 개념은 단지 중개수수료(brokerage fee)로 한정하지 않고, 거래 지연에 따른 시간비용(timing cost)과 체결실패에 따른 |

| | |
|--|---|
| | <p>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포함하여 넓게 해석할 경우 중개회사별로 거래비용(Cost)이 달라질 수 있음</p> <p>중개능력(Best Execution)</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호가의 정확성과 신속한 체결 능력이 증권사 선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 2. 중개회사의 팀워크와 개별 브로커의 능력을 감안하여 거래 우선순위 결정 <p>중개회사의 안정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고려 2. 매매와 관련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는 매 분기별로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Analyst), 트레이더의 브로커(Broker) 평가회의에 따라 중개회사를 평가하고 다음 분기 거래 중개회사 결정함 ● 결정에 따른 중개회사별 거래순위 기준(guideline)을 월별로 점검하고 차이 원인등을 분석 |
|--|---|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및 이익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1.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유의사항: 해당사항 없음

2. 수익증권의 환매관련 유의사항

가.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나.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 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의 사유

- 1)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2)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1) 또는 2)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구체적인 사유는 약관 제 26 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다.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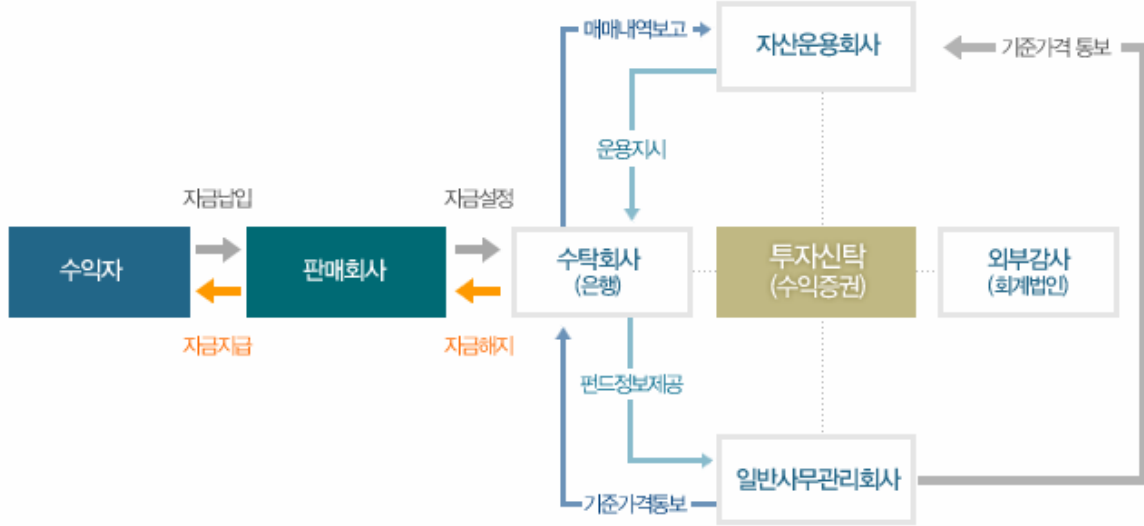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간접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간접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 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3. 이익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 3 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펀드의 운용구조



I.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 | |
|----------|---|
| 회 사 명 | 세이에셋코리아자산운용(주)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87번지 삼성화재빌딩 7층 ☎3788-0550 |

2. 주요 업무

가.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해지/투자신탁의 운용·운용지시/투자회사재산의 운용/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나. 자산운용회사의 의무 및 책임

- 1)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자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2) 책임
 - 가)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투자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나)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3) 연대책임
 - 가)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업무위탁

1) 기준가격 산정업무의 위탁

- 가)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합니다.
- 나)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다)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해서는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투자재산에서 보수를 지급합니다.
- 라) 업무를 수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자산운용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수익자명부 작성업무의 위탁

- 가)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나) 업무를 수탁받은 증권예탁결제원이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자산운용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최근 2개 사업연도의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원)

| 대차대조표 | | | 손익계산서 | | |
|------------------|------------------------|------------------------|------------------|--------------------------------|--------------------------------|
| 과 목 | FY2006 2007.3.31 현재 | FY2005 2006.3.31 현재 | 과 목 | FY2006 (2006.4.1~2007.3.31) | FY2005 (2005.4.1~2006.3.31) |
| 유동자산 | 26,767 | 20,662 | 영업수익 | 14,238 | 14,447 |
| 고정자산 | 1,885 | 2,020 | 영업비용 | 5,898 | 6,082 |
| 자산총계 | 28,652 | 22,682 | 영업이익(손실) | 8,340 | 8,365 |
| 유동부채 | 1,646 | 2,267 | 영업외수익 | 794 | 7 |
| 고정부채 | 0 | 0 | 영업외비용 | 23 | 11 |
| 부채총계 | 1,646 | 2,267 | 경상이익(손실) | 9,111 | 8,361 |
| 자본금 | 12,000 | 12,000 | 특별이익 | 0 | 0 |
| 이익잉여금 | 15,006 | 8,415 | 특별손실 | 0 | 0 |
| 자본조정 | 0 | 0 | 세순이익(손실) | 9,111 | 8,361 |
| 자본총계 | 27,006 | 20,415 | 법인세비용 | 2,520 | 2,301 |
| 부채 및 자본총계 | 28,652 | 22,682 | 당기순이익(손실) | 6,591 | 6,060 |

4. 운용자산 규모(2008년 2월 5일 기준)

(단위: 억좌)

| 종 류 | 주식형 | 혼합형 | 채권형 | MMF | 채간접 | 총 계* |
|-----|-------|-------|-------|-----|-----|--------|
| 수탁고 | 6,114 | 4,595 | 3,768 | - | 201 | 14,677 |

*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 운용자산 제외한 수치임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팀운용)

(단위: 개, 억좌)

| 성명 | 나이 | 직위 | 운용현황(2008.02.05) |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비고 |
|-----|-----|----|------------------------|------------------|--|-----|
| | | |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 수 | 다른 운용자산 규모 | | |
| 조정수 | 67년 | 이사 | 55 | 21,101 | (팀운용)주식운용팀장 미 조지워싱턴대학교 금융공학 석사 하나알리안츠투자신탁운용 주식팀장(4년) 세이에셋코리아자산운용(주) 주식운용팀장(2004.10~) | 팀운용 |

* 투자일임 포함,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기준, 해당 간접투자기구 제외

II.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 판매회사 | 주 소 | 연 락 처 |
|--------------------------------|--|-----------|
| 키움닷컴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www.kiwoom.com) | 3787-5000 |
| 굿모닝 신한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www.goodi.com) | 3772-1000 |
| SK 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SK 빌딩(www.sks.co.kr) | 1588-8245 |
| 대신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www.daishin.co.kr) | 769-2000 |
| 이트레이드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2(www.etrade.co.kr) | 1588-2428 |
| 삼성증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종로타워빌딩 (www.samsungfn.com) | 1588-2323 |
| 메릴린치인터내셔널 인코포레이티드증권 서울지점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84번지 서울파이낸스센터 29층 | 3707-0400 |

2. 주요 업무

가. 판매업무에 관한 사항

- 1) 수익증권 판매업무(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업무)
- 2) 수익증권 환매업무
- 3) 수익증권 교부업무
- 4)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지급업무
- 5) 각종 장부·서류등의 비치, 수익자 앞 제공 및 공고 업무
- 6) 기타 법령 및 신탁약관에서 규정한 사항

나. 판매회사의 의무 및 책임

1) 의무

- 가)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 동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나) 판매회사의 임직원 및 취득권유인은 법 제57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판매행위준칙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책임

가) 판매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 판매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연대책임

가)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III.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 | |
|---------|-----------------------|
| 회 사 명 | 우리은행 |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1가 203번지 |
| 전 화 번 호 | 2002-3000 |
| 홈페이지 | www.wooribank.com |

2. 주요 업무

가. 수탁회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2)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3)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4)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따른 감시
-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나. 수탁회사의 의무 및 책임

1) 의무

가) 수탁회사는 간접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약관,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 수탁회사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간접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자산운용회사의 이행내역/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2) 책임

가) 수탁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탁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연대책임

가)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IV.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 | |
|-------|----------------------|
| 회 사 명 | HSBC펀드서비스(주) |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
| 전화번호 | 3771-3800 |
| 회사연혁 | 2000. 05. 02 설립등기 설립 |

2. 주요 업무

가. 주요 업무내용

- 1) 기준가격의 산정업무
- 2) 기준가격의 통보업무

나.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 1)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신탁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2)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자산운용회사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3)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V.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가. 한국채권평가(주)

| 회 사 명 | 한국채권평가(주) | KIS채권평가(주) | NICE채권평가(주) |
|-----------|--|---|--|
| 주 소 및 연락처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9층 (02-399-3350)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유화증권BD 9층 (02-3770-0400)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번지 한섬빌딩 6층 (02-398-3900) |

2. 주요 업무

가. 주요 업무내용

채권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간접투자자기구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요업무로 합니다.

- 1)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평가 업무 수행
- 2) 미공개정보의 이용 금지
- 3)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평가 업무를 위하여 취득한 정보를 다른 업무의 수행에 이용하지 아니할 것

제 4 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I.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가. 구성 및 권한

- 1)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이 때,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나.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1) 수익자총회의 소집

- 가) **수익자총회**는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의 요청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며 자산운용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합니다.

2)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 가)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나) 증권예탁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 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가)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라)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시간중에 언제든지 나)의 규정에 의한 서면 및 참고자료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나)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을 **수익자총회**일부터 6 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다. 수익자총회 의결사항

- 1)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수탁회사의 변경 /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2. 잔여재산분배

- 가. 자산운용회사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나. 수탁회사가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다.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라.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및 신탁약관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의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마.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매각지연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바. 수익자가 상환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판매회사에게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가.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간접투자자에 관련된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나.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간접투자재산명세서 / 간접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자산매매거래내역서

4. 손해배상책임

- 가.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나.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재판관할

- 가.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 3 조제 13 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가. 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나.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자산운용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am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영업연도의 결산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건전성·수익성 및 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가. 영업보고서

- 1)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변동상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나. 자산운용보고서

- 1)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121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3개월에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송하여야 하나, 간접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 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유한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수익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 수탁회사보고서

- 1)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수탁회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유한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수익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2)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라. 약관변경: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1)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한 모든 수익자에게의 통지
- 2)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신탁약관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및 컴퓨터통신을 통한 1회 이상공고 신탁약관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약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내에 1월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장부·서류: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가. 수시공시 등

- 1)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 2)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자산운용회사(www.seiak.com), 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률 /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명령,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수도 / 자산운용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그 내용 /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 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재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나. 의결권 행사

- 1)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행사 내용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가)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 나)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참고 펀드 용어 정리

| 용 어 | 내 용 |
|----------------|---|
| 개방형(간접투자기구) |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
| 금리스왑 |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
| 기준가격 |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 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 레버리지효과 |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
| 보수 |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 설정 | 신탁약관에 의거,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수탁회사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
| 수익자총회 | 펀드의 수익자 회의를 일컫는 말입니다. 2003 년 10 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되면서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입니다. 수익증권 총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 개월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수익증권 |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
| 수탁고 |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자산운용회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
| 원천징수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 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
|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 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자산운용협회가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뿐 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
| 자산유동화증권 |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 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

| | |
|-------------|---|
| 종류형(간접투자기구) | 절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
| 주식형(간접투자기구) | 약관(정관)상 주식에 간접투자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
| 증권투자신탁 | 간접투자재산의 40% 이상을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
| 추가형(간접투자기구) |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
| 판매수수료 |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
| 환매 |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환매수수료 |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
| 환매조건부채권 |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

세이 고배당 주식형 투자신탁(종류형)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투자신탁 명칭 : _____

판 매 일 : _____

투자자 확인 사항

-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 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 _____ 그 주요내용을 _____.

_____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